

CONTENTS

1. 한국법학원 제25회 법학논문상 시상식-2021년도 정기총회 p.2

이동진 교수 “더 이론적이면서 더 현실적인 연구하겠다”, 송민경 고법판사 “법관의 사법철학 논의 본격적으로 열어갈 때”

2. [인터뷰]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p.3

“법학의 고사(枯死) 위기, ‘학문적 열정’ 공통분모로 한 법학교수 사회 화합으로 풀어갈 것”

3. 대한변호사협회 p.7

대한변협 첫 온라인 연수회...변호사 공익대상에 김용직 변호사,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4. 한국인공지능법회 p.10

대화형 인공지능 ‘이루다’ 서비스 종료, 쟁점화된 인공지능 윤리 이슈

5. 대법원 판례 p.12

양형에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입금내역을 만들어 증거위조 등으로 기소된 사건,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등록 지연이 불법행위인지 여부

6. 헌법재판소 판례 p.14

공수처법 사건- 2020헌마26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7. 해외법뉴스 p.16

‘잊힐 권리’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8. 입법뉴스 p.18

[2월 둘째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원조직법, 법관인사규칙 外

기사 1

한 · 국 · 법 · 학 · 원

제25회 법학논문상 시상식-2021년도 정기총회

이동진 교수, “더 이론적이면서 더 현실적인 연구하겠다”
 송민경 고법판사, “법관의 사법철학 논의 본격적으로 열어갈 때”



한국법학원이 지난 1월 28일, 2021년도 온라인 정기총회 및 제25회 법학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을 비롯한 현 임원들과 이재후 전 한국법학원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용구 법무부차관,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대의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법학원은 매년 1월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규정’에 따라 법학계와 실무계에서 각 한 편씩 총 두 편의 논문을 선정해 법학논문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제25회 법학논문상 심사위원으로는 이용구 법무차관(위원장), 홍동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신양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법학원 사업이사), 이연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법학원 연구이사/편집위원장)가 위촉되어 엄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올해 논문상 후보로 추천된 논문은 학계 18편, 실무계 9편이다. 이 중 심사위원회가 최종 선정한 학계 수상 논문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의 “착오개념과 취소요건-비교법적 고찰로부터의 시사-”, 실무계 수상 논문은 서울고법 송민경 고법판사의 “난해한 사안에서의 법적 판단에 관한 연구-법의 공간적 재현과 반성적 추론의 시론-”이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심사강평을 통해 “여러 사안유형을 포함하는 착오법리에 관하여 기능적 관점에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한 이동진 교수의 논문은 충실한 문헌조사와 치밀한 논리전개로 인해 그 학술적 가치가 높았다”고 평가하는 한편 “법 해석의 의미에 관한 법철학적 과제에 관하여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송민경 부장판사의 논문은 실무가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법해석론에 관한 독창적 견해를 주장한 완성도 높은 논문”이라고 평했다.

영상으로 수상소감을 전한 이동진 교수는 “각각의 연구자는 역사적 축적 위에 곧바로 자기 몫을 쌓아 올릴 수 없고, 스스로 그 모든 이해의 역사를 반복하여 자신의 이해를 그 단계까지 발전시키고서야 비로소 자기 몫을 그 위에 얹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가장 이론적이고 원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할 때 더 활력 있고 진지한 논의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그것이 수입품이 아닌 우리의 것(논의)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생각을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더 이론적이면서도 더 현실적인 연구에 정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송민경 고법판사는 “수년간 재판 경험을 쌓으면서 법리와 학설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느꼈고, 그러한 문제들을 추적해 들어가면 결국 법리의 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어떤 관점의 차이와 맞닥뜨리게 된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다”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법리 위주, 사건 처리 위주의 재판실무에서 벗어나, 우리 공동체의 지향과 다짐이 무엇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를 열어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달려 있는 여러 사회적 논쟁들을 법적 논쟁으로 정련시키고, 바로 그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 공동체가 약속하고 다짐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득력 있게 논증함으로써 분쟁과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법의 지혜가 필요한 때”라며 “우리나라 법률문화를 선도하는 한국법학원에서 제 부족한 논문에 과분한 영예를 안겨주신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법관의 사법철학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열어갈 필요가 있음을 인정해주시는 의미일 것이라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서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소속 기관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임원진 변경이 이뤄졌다. 새로 선임된 한국법학원 임원진은 부원장 이용구 법무부차관, 부원장 조홍식 한국법

학교수회 수석부회장, 이사 김소연 현재 선임헌법연구관, 이사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이사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이사 정지영 법무부 법무과장, 이사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이사 이계정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차장이다. 임기는 2022년 정기총회일까지다.

지난해 한국법학원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를 비대면 웨비나 형태로 진행한 바, 사전등록인원이 1천명에 이를 정도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한국법률가대회의 모든 세션은 한국법학원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보기를 제공한다. 한국법학원이 주관하는 다른 행사인 ‘한국법학원 포럼’, ‘법률가가 된 뜻을 되새기는 강좌’, ‘유관기관과의 공동심포지엄’, ‘지방 로스쿨을 중심으로 한 법조 선후배 만남’ 등은 올해 코로나 상황에 맞춰 비대면 또는 대면의 형태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법학원이 격월마다 발간하는 학술지 「저스티스」는 올해도 예년과 같이 발간하되, 지난해 치러진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 특별호가 추가된다. 2020년 1월 창간하여 법학원의 당면회원인 전체 법률가들에게 배포하고 있는 ‘한국법학원 뉴스레터’도 예년과 같이 매월 발간할 예정이다. 민상법 연구위원 총 6인으로 구성된 학술연구부는 수행한 연구과제를 한국법학원 연구총서 형식으로 발간하여 비치하고 있으며, 한국법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권오곤 원장은 “한국법학원은 법률 실무계와 학계를 모두 아우르는 법률가들의 유일한 조직으로서, 우리나라 법률문화의 창달과 법치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해 왔다고 자부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법률가들이 한국법학원이라는 너른 광장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교류하고 연구하면서 대한민국의 법률문화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국법학원도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2

인 · 터 · 뷰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의 고사(枯死) 위기, ‘학문적 열정’ 공통분모로 한 법학교수 사회 화합으로 풀어갈 것”

한국법학교수회 제15대 집행부가 지난 2021년 1월 1일, 닳을 올렸다. 새 집행부를 이끄는 선장은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제13대 집행부 때부터 교수회의 회무에 참여해 온 그는 “한국법학교수회를 모든 법학교수들의 소통과 통합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히고서 지지를 얻었다. 정 회장이 지금 이때에 교수들의 ‘소통과 통합’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법관 탄핵 등 이전에 없던 격동에 휩싸인 사법부를 바라보는 정 회장의 생각도 들여볼 수 있었다. 사법연수원 15기인 그는 대법원 판사를 끝으로 11년의 법원 생활을 마치고 모교인 고려대로 왔는데, 법원 밖에서도 여전히 애정을 가지고 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법학의 고사(枯死) 위기에 대해서는 ‘큰일’이라는 말을 거듭했다. 로스쿨과 변호사업계의 얽힌 역학관계는 좀 더 큰 시각에서 풀어보자고 제안하면서, 변호사의 가치와 신뢰 제고는 로스쿨 교수로서도 추구하는 지향점이며, 그 방법의 측면에서는 서로 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다음은 정영환 회장과 나눈 문답.

Q. 한국법학교수회를 “소통과 통합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현재 법학과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있는 학교는 전국에 100여 개, 전체 법학교수 인원은 1,700여 명 정도 된다. 제13대부터 교수회 회무에 참여했는데,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법학교수 사회가 둘로 쪼개어졌다. 각자 속한 대학이 로스쿨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교수들이 온 정신을 쏟았고, 로스쿨이 유치된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 사이에 벽이 생겼다. 여기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까지 생기면서 사이가 많이 멀어졌다.

지금은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다. 우리 법학교수 사회가 분리를 경험했지만, 이제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또 들여보면 주변에 많은 법학교수님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죽어가는 법학을 살리려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

교수들은 학문과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추구하는데 관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학교수회는 어떤 이념집단이나 이익집단과 같은 모습이 될 수는 없다. 로스쿨 교수든 법학과 교수든 ‘법학을 향한 열정과 진리 탐구의 의지’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만으로 화합할 이유는 충분하다.”

Q. 현실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로스쿨과 비로스쿨 간 입장차와 시각차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로스쿨이 처한 어려움은 학생들을 변시에 합격시키기 위해 몰두하다 보니 학문을 돌보지 못하는 어려움이고, 일반 법학과가 겪는 어려움은 학교 내 입지가 좁아지면서 법학과가 통폐합에 처하기도 하는 어려움인데, 각자 처한 어려움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크게 보면 같은 어려움이다. 즉, 자신들의 연구 분야인 법학이 고사 위기에 몰렸다는 어려움은 공통적이다.

법학교수가 로스쿨에 있느냐 법학부에 있느냐 하는 것은 얼마든지 변동이 될 수가 있고,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학교가 박탈감을 가질 이유는 없다. 서로 역할을 나눠 맡게 된 걸로 보면 된다. 로스쿨 교수는 실무가를 양성해서 사회로 내보내는 역할이고, 학부 교수는 그 보다는 앞 단계의, 법학적 소양을 가진 학생들을 교육해서 로스쿨, 경찰 등 공무원, 기업, 부동산 분야 등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사회의 근간이 되는 법학을 연구하고 교육해서 법적 소양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사회로 내보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얼마 전 로스쿨 원장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 동의를 한 것은, 로스쿨은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학생들을 반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리트 점수나 영어 성적 등 기본요소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변시적 합성이 높게 나타나는 법학 전공자들이 유리하다. 학부 법학과가 잘 되어서 교육이 충실히 잘 되면 로스쿨에 오는 학생들도 그만큼 수준 높은 인재가 된다. 학부 법학과가 상당히 중요하고, 교수들 간에 긴밀한 소통과 학문적 교류를 하면서 입장차를 좁히고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Q. 재야 법조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로스쿨이 합격률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변호사업계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양측이 어떻게 대화의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변호사업계의 불황으로 인한 합격자 수 감축과 그로 인해 로스쿨 교육이 변시에 매몰되는 현상, 그리고 합격률이 낮고 경영이 어려운 지방 로스쿨에 대한 통폐합 주장이나 법학의 고사 위기 문제는 다 연결되어 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알렉산더 대왕과 고르디우스 매듭(-고르디우스가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아시아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매우 복잡하게 묶어놓은 매듭. 수백 년간 아무도 풀지 못했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칼로 끊어서 매듭을 푼 일화)’처럼 시각

을 새롭게 하고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법학교수들 중 사회에서 변호사들의 가치가 하락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본다. 다만 변호사가 많아질수록 변호사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주장을 나는 달리 보고 있다. 빠른 사회 변화로 인해 변호사의 역할도 상당히 변화했다는 점을 많이들 체감할 텐데,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의뢰인이 예전처럼 전적으로 변호사만 의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뢰인은 자기 사건이기 때문에 법도 찾고 판례도 찾고 깊이 있게 조사하는데, 여러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로서는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 의뢰인보다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변호사들의 전문성의 강화 필요성과 현재 시대상황에 맞는 역할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로스쿨을 수료하고 변호사 업계로 나가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송무영역만 바라보지 말고, 자신이 진출할 수 있는 전문 영역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감을 가지고 전문영역을 개척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

로스쿨 수료자들은 우리나라 최상위 인재들이다. 다양한 전공 바탕을 가지고 사안을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모두를 송무 영역으로만 보내려고 로스쿨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송무를 경험하더라도 이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영역을 찾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한해 배출 숫자만 놓고 시장의 어려움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게, 그 인원이 다 송무 영역으로만 진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로스쿨 수료 인원이 많아진다는 건 국가 전체로 생각했을 때 그만큼 인재 풀이 넓어진다는 의미다. 시대적으로도 법률가

들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입법·제도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뿐 아니라 통일이 되면 북한과 러시아, 중국에 진출할 기업들을 도와줄 법률가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우리가 대륙법계 국가지만 미국법적 요소를 많이 도입하는 추세여서, 디스커버리제도와 같이 변호사 역할 비중을 훨씬 키울 제도가 도입된다면 변호사업계에 상당한 활력이 생길 것이다. 지금처럼 사건을

모두 재판으로 끝내려고 하지 말고 소 제기 후에 변호사들 사이의 자율적인 증거조사를 증진하는 디스커버리제도의 활성화, 조정 및 화해제도와 중재제도 등 활성화를 통해서 재판을 통한 분쟁 해결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면, 분쟁해결 과정에서의 변호사 역할이 크게 증대할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더 많은 변호사가 필요하게 된다. 국가 간 외교도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결정적인 외교 현장에는 법을 다루는 변호사가 있는 것이 국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



다.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그 자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 진출, 공무원, 사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여 사회와 국가 속에서 법의 지배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변호사의 수가 많아야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력의 증진에 발맞추어 다양한 전문 영역에서 변호사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거기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로스쿨을 수료한 졸업자에 대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이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계속 로스쿨에 오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변호사 숫자가 많아지는 것과 변호사

업계가 어려워진다는 것이 정비례 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변호사 숫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때에 변호사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변호사들의 사회적 역할이 증진될 것이라고 본다. 변호사 수를 늘리는 것이 변호사 시장과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첩경이다.”

Q. 구체적으로 로스쿨에서 육성하고 추구하는 인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면 될지.

“사법시험제도가 ‘법조인’ 양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로스쿨은 조금 더 넓게 ‘사회 전 영역에서 법적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를 선도해 나갈 사람들’을 양성하는 제도라고 인식을 해줘야 한다. 이는 전통적인 법조인의 역할이 시대 변화에 따라 변했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제도 자체가 추구하는 지향점도 그 폭이 더 넓어졌다. 이런 인재가 되려면 법 지식과 법 적용의 기술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로스쿨 3년 과정이 온통 변신 준비에만 함몰되는 것이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리걸 마인드(legal mind)에 더하여 시대에 맞는 리더십,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인성 함양까지 교육할 의무가 있지만, 학생 못지않게 로스쿨 교수들도 변신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크게 가지고 있어서 여의치 않은 측면이 있다.

로스쿨에서는, 아무리 지루한 수업이어도 조는 학생을 한 명 볼 수가 없다는 점을 종종 이야기한다. 어렵게 로스쿨에 들어왔는데, 합격률이 50%에 불과하여 출구가 너무 좁다 보니 거기에서 오는 긴장감이 얼마나 크겠는가. 교수들도 농담 한마디 편하게 못하는 분위기다.

저는 조금해 하고 불안해 하는 학생들을 보면 늘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라고 조언을 한다.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는 긴 레이스를 하기가 어렵다. 로스쿨 생활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 많기 때문이다. 옆의 학생들도 다 같은 조건이니 경쟁자로만 보지 말고, 함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자 협력 대상이라는 마음을 가지라고도 말한다. 학생들이 혼자 공부해야 된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토론하고 같이 고민하고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함께 가야 더 멀리 간다. 로스쿨 3년은 경쟁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가장 자신만을 생각하기 쉽고 이기적일 수 있는 시간이지만, 이 기간에 협력과 배려를 몸에 익힌다면 후에 사회에 진출하여 남다른 인재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다. 로스쿨 3년 공부하고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가장 바쁜 시기에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형성한다면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습관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공부가 잘 안 될 때 자리에만 계속 있으려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운동을 하여 체력을 관리하는 편이 좋다’고 자주 조언해 준다.”

Q. 최근 법관 탄핵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회장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전에 비해 법원과 법관이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 같다. 내부에서는 힘든 일일 것인데,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재판이라는 게 무얼 위해 하는 것이냐’란 중요한 질문이 우리 사회에 던져졌고, 법관 개인으로서는 ‘내가 무엇 때문에 법관을 하는가’란 걸 스스로 다시 질문해 보고 마음가짐을 추스르게 된 계기가 됐을 것이다.

법관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다. 어떤 내외부 압력에도 굴할 이유가 없고, 쿨하게 앞만 보고 갈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법관들이 국민만 의식하고 있으면 이게 가능한데, 시스템적으로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본다. 법원은 법관 개인을 믿고 자율성과 책임을 더 많이 주어도 될 것이다. 법원만큼은 관료적 색채가 거의 없는 조직이 되도록 최대한 만들어주어야 한다. 일련의 ‘사법 개혁’의 시도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간다면 올바른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좀 더 두고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정해진 제도이고, 법 절차에 따라 탄핵사유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국회에서 법관의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번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 가결은, 시간적으로 사실조사 등의 절차 없이 이루어졌고 탄핵사유가 법원의 징계절차에서 이미 견책처분으로 마무리 되었다는 점, 탄핵은 대통령·법관 등 국가의 주요인사에 대한 파면을 매우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탄핵을 가결하여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를 하고 그 심판을 받도록 한, 국가의 주요인사에 대한 파면을 위한 특별절차라는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법적으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법리적으로는 이것이 헌법 제65조에 규정한 취지에 반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신의칙상 탄핵소추권의 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 특히 일사부재리, 탄핵소추의 이익의 법리에 비추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국가적 형태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되더라도 명암이 있을 것이므로, 법의 지배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길 기대해

본다. 이번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이, 법관 개개인들에게는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사법부 독립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개인과 전체로서의 사법부가 혼연일체가 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므로, 사법부의 집행부는 자신이 누구에게 임명되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 본질을 지켜나가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서는, 이것이 형사사건화 되어 법관들이 재판받을 받게 된 것은 사법부 전체의 입장에서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보고, 사건기록을 보지는 못했지만 큰 틀에서 형사사건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든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기존의 사법부가 해왔던 오랜 관행이 모두 새롭게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

현재 대법원의 1년 사건이 4만 건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현행 상고심 구조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바꾸어야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에서는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와 청와대 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발생했다. 지금도 여전히 대법원의 상고제도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국민의 편의를 위해 개선될 필요성이 명약관화하다. 만일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집행부에서 상고법원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고등법원 상고부안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추진 방법은, 국회와 정부가 자발적으로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결하는 방식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Q. 교수회장으로서 임기 동안 특히 주력하실 부분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법조인양성제도와 법학교육이, 미국 로스쿨로 대

표되는 영미법계와 독일 법학교육으로 대표되는 대륙법계를 접목한 형태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독일처럼 법학의 기본교육은 학부에서도 하고, 미국처럼 법률실무가는 로스쿨에서 교육하는 우리의 시스템이 한편으로는 매우 독특하지만, 그게 또 우리만의 강점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법학을 법학과에서만 가르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경영, 행정, 정외, 의료, IT 등 법학이 꼭 필요한 학과에서는 그 분야에 맞는 법과목을 개설하고, 그것을 위해 해당 학과에서 법학교수를 채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임기 동안 전국의 법과대학장과 로스쿨 원장, 대학총장님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볼 생각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해당 학과 및 해당 대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사회의 근간은 법이고, 모든 분야에는 기본 규칙과 크고 작은 규정이 있다. 법학이 각 분야에서 뿌리와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 그 분야가 안전하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 내가 법학교수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이치가 그렇다.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분야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일이 된다. 얼마 전 찾아간 대학에서 로스쿨 원장님과 해당 대학 총장님도 나의 이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걸 보면서, 내가 임기 동안 최대한 많은 학교를 찾아가 필요한 분야에 법학과목 개설 및 법학교수 채용을 권유해 보겠다고 다짐을 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대한변협, 법무부,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 대화와 토론을 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점진적 제고와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학부의 법학수요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등에 법학과목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일들은 법학교수회가 주관이 되어야 하는 일이므로 회장으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

기사 3

대 · 한 · 변 · 협 · 회

대한변협 첫 온라인 연수회 개최

변호사 공익대상에 김용직 변호사,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지난 2월 1일, '제82회 변호사연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변호사연수회는 대한변협이 1978년부터 매년 여름과 겨울,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국 변호사 대상 연수교육으로, 이를 통해 회원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 이론과 실무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연수회에 개설된 강좌는 총 6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요 쟁점(이전오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노동의 미래(이철수 서울대 법전원 교수) △징벌적 손해배상의 현황과 과제(김현수 부산대 법전원 교수) △개정 형사소송법 분야 강좌(이창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공정경제 3법: 주요 개정사항과 실무상 시사점(천경훈 서울대 법전원 교수) △변호사 윤리연수(김대휘 대한변협 징계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이번 온라인 연수는 신청한 회원 누구나가 무료로 수강하였으며, 대한변협은 참여자가 총 800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강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변호사 공익대상' 및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시상이 진행됐다. '변호사 공익대상'은 인권옹호 활동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통해 공익을 실현하고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변호사 개인 및 단체의 업적을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올해 수상자는 개인부문에 김용직 변호사, 단체부문에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이 선정됐다.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은 일과 가정 양립 문화 창달을 선도한 법률사무소를 격려하여 법조계 일·가정의 조화로운 양립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상으로, 올해는 '법무법인 정의'가 수상단체로 선정됐다.

■ '상속세 및 증여세'와 '징벌적 손해배상'

이전오 교수는 이번 강의에서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특징을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불과할 정도로 미약함 ▲세제의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함 ▲고소득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터잡은 정책적 경향 ▲증여세의 경우 명목은 조세이나 실질은 징벌적 성격인 경향 ▲사적 자치 및 경제활동의 자유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사례 존재 ▲상속·증여세제를 완화하려는 국제적 흐름과 어긋나는 세제로,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 등을 꼽았다.

상속세법의 주요 쟁점으로는 ▲과세체계를 유산세(estate tax) 방식으로 할지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 방식으로 할지의 문제 ▲상속재산의 분할·재분할에 따른 조세문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문제 등을 짚었으며, 심화 논점으로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등을 판례와 함께 살펴봤다. 이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중장기과제로 ①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갈지 ②부부 간 부(富)의 이전에 대한 과세 문제 ③가업승계세제 확대 여부 ④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조세적 대처의 타당성 여부 ④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문제 등을 제시했다.

김현수 교수는 징벌배상제도 논의의 현재 상황을 짚어보면서 "2020년 9월 현재 약 20여 개의 국내 법률에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실질적 운용이 되고 있으며, 새로운 분야인 자동차 결함 은폐, 중대 재해, 층간소음 부실시공, 악의적 언론 보도 등에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의 제도 운용 사례를 살펴보면 "20세기 후반 대량불법행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적 장치로서 징벌배상을 도입한 미국은, 그 부작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징벌배상 총액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배상액의 자의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지침 마련 등 노력이 이뤄지는 것에 비추어,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정경제 3법



이창현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그로 인해 검찰과 경찰 각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실무 변화가 생기는 지점들을 짚어봤다. 신설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과 함께 권한과 기능 등을 살펴봤으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대책 등 보완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최근 개정된 법령 내용으로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와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동법 제201조)을 위한 피의자 수색의 경우 긴급성 요건 추가 ▲즉시항고의 제기기간(동법 제405조)과 준항고 제기기간(동법 제416조 제3항)을 기존 3일에서 7일로 연장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총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 제16849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발부과정에서 채취대상자 의견 진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영장발부 후 불복 기회를 주는 등 내용의 디엔에이신원 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866호) 등을 소개했다.

최근 형소법 분야 중요 판례로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장비해제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2015도2357), 함정수사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기준과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2019도15987), 대물적 강제처분에서의 관련성 판단기준(2019도14341), 영장의 사전제시 미비와 사후에 변호인에게 영장 내용을 확인받은 경우(2019도3526), 현행법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와 제출의 임의성(2019도17142), 공소장 변경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여부(2020도10814), 임의수사로서의 임의동행과 제출의 임의성(2020도398), 국선변호인에게 참여통지를 누락한 압수수색과 증거능력(2020도10729),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청와대 문건’과 이를 기초로 한 진술의 증거능력(2018도2236 전합체),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된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종업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2016도9367),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형기의 장단에 관한 판단기준(2020도4140 전합체),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형종상향금지의 원칙(2020도355)” 등을 설명했다.

천경훈 교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인 상법 회사편 개정(2020. 12. 29.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2021. 12. 30. 시행),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2021. 6. 30. 시행)의 주요 사항과 실무상 시사점을 살펴봤다. 천 교수는 이번 법 개정이 ‘공정경제 3법 vs. 기업규제 3법’의 정치적 프레임 대결로 치달았던 현상을 비판하며, “법률가라면 법률가답게 합리적인 해석론과

입법론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상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선임 시 분리선출제,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정기주주총회 유연화를 위한 제350조 제3항 삭제’로 정리하면서, 이에 따라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 제기 가능(단, 자회사에 먼저 제소청구) ▲감사위원 1명은 ‘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함에 따라 이사 지위 취득 자체가 3% 의결권 제한을 받음 ▲4,5월 정기주총도 가능 ▲상장회사에서 일반조항에 따른 지분율을 갖춘 소수주주는 보유기간이 6개월에 미달해도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함 등의 변화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전면개정이므로 조문번호가 모두 바뀐 데 더하여 ▲자회사·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소유 허용 ▲신규지정 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규율 ▲사익편취 관련 규제대상 확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손해배상청구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부과 등을 주요 개정 사항으로 정리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건전성 관리가 부족하여 이러한 금융회사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게 됨에 따라, 2018년부터 시범시행되던 ‘통합감독모범규준’을 법률로 제정하고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DB, 교보 등 6개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다. 이들은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준을 수립하고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기자본 요건이 부과되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 변호사 윤리와 변호사 징계 사례

김대휘 변호사는 “법은 변호사에게 자격을 부여하면서 전문적 법률지식과 엄격한 직업윤리를 요구하며, 이를 법적 의무로 고양하고 있다”면서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법원(法源)으로서 ‘변호사법 및 시행령’,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변호사윤리장전(강령과 규약)’, ‘변호사업무광고규정’, ‘변호사 징계규칙’ 등을 들었다. 특히 광고규정 위반의 경우 변호사 회원들로부터 “법규 부지”나 “광고업체의 행위”라는 항변이 많이 나온다면, “변호사는 법적 의무의 내용을 알고 실천하여야 하며, 따라서 변호사의 법규 부지 주장은 정당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변호사는 그의 양심이 곧 직업윤리이며,

변호사의 윤리는 바로 품위와 성실, 진실”이라고 말하면서 “변호사 윤리가 바로설 때 시민들이 법과 법조인을 신뢰하고, 이를 통해 변호사 직업도 확보되며, 나아가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징계사례를 소개한 바, △각종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행위 해태 △전문분야 등록 없이 ‘전문’ 표시 위반 △불특정다수에게 우편물·메일·문자메시지 발송 △구치소 물품 반입 △소속회 분쟁조정위 결정 미이행 △추가보수 요구 △

세금신고 누락 △월회비 미납 △경유업무프로그램 미입력 △공익활동 미이행과 보고의무 위반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 위반 △수임 자료 등 제출 위반 △변호인 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위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임제한 위반 △연고 관계 등의 선전 금지 △계쟁 권리의 양수 금지 위반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명의 대여 △소개비 교부 △겸직 제한 위반 △변호사 진실의무 위반 또는 허위자료 제출 등이다.

기사 4

한 · 국 · 인 · 공 · 지 · 능 · 법 · 학 · 회

대화형 인공지능 ‘이루다’ 서비스 종료, 쟁점화된 인공지능 윤리 이슈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고학수 교수)가 지난 2월 4일, “이루다 사건으로 본 인공지능 거버넌스: AI의 일탈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별기획 좌담회(웨비나)를 개최했다. 최근 AI 챗봇 이루다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일부 유저들의 사례가 부각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인공지능 윤리와 적법한 개인정보 이용이라는 문제에 집중됐다. 이에 학회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해 보고, 사안의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이번 좌담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날 참여한 패널은 6명이다. 이준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연구) 전공으로, 기업체 근무 및 챗봇 개발 경험에 바탕한 기술적 부분과 현장 고민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 인공지능법 전공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는, 인공지능 모델링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MLP(Multilayer Perceptron, 다층 퍼셉트론) 등 기술적 측면과 법·정책 관점을 공유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애라 교수는 인공지능 윤리와 혐오, 젠더, 공정성을 키워드로 하여 사안을 검토했다. 정교하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변호사는 글로벌 IT 기업이 인공지능 윤리 영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고민들을 하며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지를 소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미

나 정책실장은 이번 사안을 보는 스타트업계의 시각과, 사회 정책적으로 업계에 대한 어떤 배려가 필요한지를 말했다. 정부인사로 참여한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이루다 사건으로 촉발된 인공지능정책의 바른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관점을 공유했다.

■ 고도화된 모델 “이루다”...‘fallback’ 메시지가 문제였나

이준환 교수는 ‘이루다 사건’의 고민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XAI, explainable AI) 문제 ▲성 고정관념 (gender stereotype) 문제 ▲관계형성 (building relationship) 의 문제다.

이 교수는 “이루다 사건은 AI라는 블랙박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었다”면서 “챗봇 대화모델을 수립할 때 챗봇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답변을 할 수 없을 때 노출할 fallback 메시지를 설정하는데, 이루다는 자연스럽고 잘 만들어진 fallback 메시지로 대화를 했지만 그 기반에 ‘무관심’ 혹은 ‘회피’의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분석했다. “페미니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라는 유저의 질문에 이루다가 “절대 싫어. 이상한 거 같아”라고 답변을 한 경우도 fallback 메시지라는 견해다. 나아가 ““무관심” 혹은 ‘회피’의 전략은, 이루다가 가진 ‘생각없이 상대에 맞춰주는 어린 여성’이라는

캐릭터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루다가 대화 상대방에 따라 친밀도 단계를 구분하고, 친밀도 레벨을 상승시킬 수 있는 구조로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 부분도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유저들이 마치 게임을 하듯 이루다와의

친밀도 레벨을 무리하게 올리려고 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루다가 기계적 친밀도가 아니라 사회적 행위자로서 유저와 rapport(라포, 친밀관계)를 형성하도록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설계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상철 교수는 대화형 인공지능의 발달단계에 따른 구분상, 이루다가 'open-domain chatbot'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나와 있는 가장 정교한 자연어 처리 프로그램을 썼고, 엄청난 양의 말뭉치가 필요한 복잡도 높은 모델이어서, 사전검수를 해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값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번 사안으로 인해 이루다 서비스가 중단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AI로 인해 채용면접이나 대출심사, 신용평가, 사법 판단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차별적 처우' 문제와, 이번과 같은 '차별적 발화' 문제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차별적 발화의 경우 주로 정신적 피해로서 객관적 차별지표 설정이 어렵고,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도 고려되어야 하며, 사전검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견해다. 그는 "이루다 서비스만 중단된 것이 아니고 이 건으로 인해 논란 국립국어원도 말뭉치 내려받기 서비스를 중단했다"면서 "국립국어원으로서 현명하게 대처한 것이지만, 연구자나 관계자 입장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생긴 것도 아니고, 개선도 가능했던 이번 사안의 결과가 이러한 데 대해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첫째 줄 왼쪽부터 고태수 회장, 이준환 교수, 박상철 교수, 둘째 줄 가운데부터 한애라 교수, 정교화 대표변호사, 아래 줄 가운데부터 정미나 정책실장, 김경만 과장>

■ “인공지능 이용자 윤리 교육도 중요하다”

한애라 교수는 “이루다 사업은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이지만, 만일 사업자가 문제가 됐음에도 중단하지 않았다면 중단시킬 수 있는 사안이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 교수는 “이루다를 20세 여성이자 유저의 애인 혹은 친구로 설정

한 때부터 젠더 이슈가 문제될 거라는 점은 예정된 일이었다”며 “기업의 입장에서 상업성을 우선해 이 같은 선택을 할 때, 상업성보다 윤리성을 앞세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의사결정 라인에 여성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기업이 정부 예산지원을 받거나 투자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윤리적 의사결정이 높은 비율로 고려되도록 제도화가 되어야 하며, 여성 개발자의 비율도 높아져야 한다”고 했다.

정교화 변호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transparency note’를 소개하며 “MS는 기업만 제품을 잘 만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윤리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겨서 고객의 윤리적 이용을 위한 안내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루다 사안을 MS의 ‘챗봇(Conversational AI)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분석하면서는 “이루다의 용도를 남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연애 대상으로 설정한 점, 기술의 한계 설명과 인간의 대응으로 전환되는 루트 없이 fallback에 의존한 점,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 안내가 미비했던 점” 등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정미나 정책실장은 “이번 사안으로 인해 스타트업계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다”면서 “기업들을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함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루다 수준의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3천 억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가 공공 차원에서 가공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만 과장은 "이루다 사안이 침소봉대가 되어 이것이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를 저해하는 데까지 이르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국민이 인공지능 윤리의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김 과장은 "국민이 인공지능을 어느 정도로 신뢰하는지의 측면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이용자로서 인공지능을 얼마나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용자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들이 마음놓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예산 뒷받침을 할 것이지만, 당장 무언가를 하라는 것보단 조금 긴 호흡으로 정부와 발을 맞춰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례

■ 2020도2642 증거위조 등 (다) 파기 환송- 양형에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입금내역을 만들어 증거위조 등으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이 1월 28일, 변호인인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반환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양형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고자, 입금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은행 거래내역 중 입금내역만 제출한 사실로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금융자료(입금확인증 등)는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타인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문서이고, 그 내용이나 작성명의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이상 증거위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피고인은 전주시 교도소에서 의뢰인인 공소외1을 접견하면서 "공소외2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 반환할 돈이 없으니 공소외2 회사측에 돈을 입금한 후 돌려받고 이를 반복하며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이 있다"는 취지로 조언하여, 공소외1의 수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공소외1의 지인을 통해 "공소외2 회사 측에 연락한 결과 돈을 보내

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공소외1의 누나A에게 공소외2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했다. A는 2018년 5월부터 한 달 여간 8차례에 걸쳐 총 3억 5천만원을 공소외2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즉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만든 입금자료를 피고인에게 팩스로 송부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소외2 회사 측에 반환한 금원이 전혀 없음에도 "공소외1이 공소외2 회사 측으로부터 받은 3억 5,000만 원을 공소외2 회사 측에 모두 반환하였다"며 공소외1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와 같이 공소외1의 누나인 A로부터 받은 종합전표 1장, 입금확인증 5장(반환금 합계 3억 원)을 제출하고, 같은 재판부에 공소외1이 수수한 알선 대가를 전액 반환하였으니 감형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한편, 같은 재판부에 입금확인증 2장(반환금 합계 5,000만 원)을 추가로 제출했다.

원심은 "형법 제155조 제1항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에는 범조의 성부에 관한 자료는 물론 양형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고, 피고인이 공소외1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2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후 다시 되

돌려 받는 방법으로 무의미한 입출금 내역을 발생시킨 후, 전체 거래 내역 중 일부인 입금내역만을 발췌하여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한 행위는 '공소외1이 공소외2 회사에 3억 5,000만 원을 반환하여 공소외2 회사가 이를 모두 수령하였다'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증거로서, 허위의 요건사실에 부합하는 내용과 가치를 지닌 기존에 없던 부진정한 자료를 작출한 행위이므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에 양형자료가 포함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증거위조죄의 '위조'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판단이다.

그 근거로 "사법절차를 담당하는 관련자들의 직무 집행이나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달리, 형법 제155조 제1항은 증거를 멸실,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을 들면서 "증거위조죄에서의 '위조'의 개념이 문서위조죄에서의 그것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작성 명의, 작성일자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증거를 위조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허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내용과 작성명의로 아무런 허위가 없는 증거를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법률 문언이 가진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 부당하게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제출된 증거방법의 증거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권한과 의무는 법원에 있기 때문에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거방법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것을 통해 증명하려는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여부에 따라 위조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 2019다260197 손해배상(기) (자) 일부 파기환송-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등록 지연이 불법행위인지 여부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이 1월 28일, "공법인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등록거부 사유의 법적 성질이 한정적 열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은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바탕으로 원고에 대한 등록심사기간을 지연시킨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일실수입 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일부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나, 협회장의 행위가 조직 내부의 대내적 업무상 행위에 불과하여 원고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그 이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법연수원을 제35기로 수료한 원고는 2006년 서울지방법변호사회 소속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 최초 변호사등록 신청을 한 뒤 개업활동을 해오던 중, 법원의 금전공탁서를 변조한 행위로 공문서변조죄가 인정되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2015년 9월 위 판결이 확정됐다. 변호사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원고는 변호사법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변호사등록 결격기간 2년'이 지난 2017년 9월, 다시 서울지방법변호사회에 변호사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지방법변호사회는 '등록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변협에 원고의 등록신청서를 송부했으나, 당시 변협회장은 원고에게 변호사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등록거부사유가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변호사등록 여부를 2017년 10월 18일, 협회의 등록심사위원회 안건으로 회부하여 심사를 진행했다.

2개월 가량이 지난 시점인 2017년 12월 12일, 심사 끝에 변협이 원고의 변호사등록을 마치자, 원고는 △원고에게 등록거부사유가 없어 변협은 변호사등록신청을 즉시 수리하여 변호사등록을 마칠 의무가 있음에도 협회장에 의해 등록심사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된 조치는 위법하고 △약 2개월간 변호사등록이 지연되어 그 기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며 △등록심사위원회의 부당한 심사절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주장하면서 "협회장은 불법행위자로서, 변협은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정한 민법 제35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일실수입 12,829,520원과 위자료 3,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원심은 "법에 정한 변호사 등록거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협회장의 단순한 의심만으로 원고에 대한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변협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백만원의 지급 의무는 인정하면서도, "변협이 변호사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등록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원고의 변호사등록을 마쳤으므로, 원고의 변호사등록이 부당하게 지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의 일실수입 배상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협회장 개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한 조직 내부에서의 대내적인 업무상 행위이고, 이러한 조치가 통상적인 업무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해자인 원고는 대외적인 법주체인 변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기관담당자인 협회장 개인에 대해서는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으나, 변협의 일실수입 배상책임을 부정한 부분과 협회장 배상책임을 부정하면서 든 이유 부분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든 근거는 ▲협회장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인 '변호사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점 ▲변호사법의 변호사등록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변호사등록의 '자격제도'로서의 성격, 입법자가 사회적 필요 내지 공익적 요구에 상응하여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등록거부사유를 새롭게 추가하여 왔던 입법연혁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등록거부사유는 한정적 열거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변협이 변호사법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를 내세워 변호사등록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나아가 ▲막연한 수준의 의심만으로 원

고의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공문서변조죄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 잡은 단순한 의심만으로 여죄의 유무를 추궁한다며 등록심사기간을 지연시킨 것은, 앞서 본 변호사 등록 관련 법리 및 변협의 법적 지위 내지 사회적 위상 등에 비추어 객관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점 ▲ 원고의 등록거부 안건 회부 및 그 심사절차 진행에 관하여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면 변협은 협회장 및 등록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속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변협의 일실수입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협회장 개인에 대하여는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데에 고의 또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과실 공무원의 면책 법리에 따라 원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원심과 다른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나아가 “변협 소속 임직원의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등록이 지연되어 등록을 신청한 변호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변협은 그 지연한 기간 동안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변호사법 제8조 제3항이 최대 3개월의 심사기간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간 동안 변협의 배상책임이 항상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가 1월 28일,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4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는 “위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이견,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과 다수의견이 각하로 본 제24조 제1항도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고 위 제24조 제1항은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은애·이종석·이영진의 반대이견,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사법권의 독립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종석·이영진의 반대이견 등이 있다.

■ 다수의견 “권력분립 원칙, 평등원칙, 영장주의 원칙 위반 아니다”

다수의견은 적법요건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본 구 공수처법 제2조,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8조 제4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한 청구가 부

적법하다고 각하하면서 “공수처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4항과 제7조 제1항은 수사처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고, 구 공수처법 제8조 제1항, 공수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13조 제2항은 청구인들이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거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수처법 제9조 제6항, 제45조는 수사처규칙의 제정에 관한 규정으로 수사처에 독자적인 규칙제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 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고, 공수처법 제10조 제2항 단서, 제16조 제2항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은 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본안판단에 들어가는는 △권력분립원칙 위반 여부(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평등권 침해 여부(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영장주의원칙 위반 여부(공수처법

제8조 제4항)를 살펴봤다.

다수의견은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의 형태로 설치하거나 ‘행정각부’에 속하는 기관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법률로써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수사처가 수행하는 수사과 공소제기 및 유지는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점, 수사처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되고 수사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의안을 제출하는 대신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수사처는 직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데, 수사처가 행정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수사처를 기존 행정조직의 위계질서 하에 편입시킨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수사처의 독립성이 중요한 만큼 수사처는 독립성에 따른 책임 역시 부담하여야 하고, 수사처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

으로부터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처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의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자의금지 원칙에 따라 심사하면서, "수사처의 수사대상 중 상당 부분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필요로 하고,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기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공수처법에서 정한 일정 범위의 범죄인 고위공직자범죄를 범한 경우 수사처의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영장주의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상 영장신청권자가 검찰청법상 검사로 한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수의견은 "헌법이 수사단계에서의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된 것은 검찰의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립시켜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줄이고자 한 것"이라고 실시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군검사와 특별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영장신청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영장신청권자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수사처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른 수사기관인 수사처수사관을 지휘·감독하고 단지 소추권자로서 처벌을 구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변호사 자격을 일정기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로서의 자격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시했다.

■ 반대의견1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은 시점, 기본권 침해 여부 판단 필요성 없어"

이선애 재판관은 구 공수처법 제2조,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8조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 각하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단순히 일반 헌법규정이나 헌법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만으로는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바, 권력분립원칙, 영장주의원칙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관한 헌법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수사처의 수사 또는 기소 대상이 되어 구체적인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과 관련될 경우에만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다"면서 "청구인들 각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절차의 수사가 이루어질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현재의 시점에서는,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기본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기했다.

■ 반대의견2

"수사처장 이첩 요청 등 내용 담은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도 본안판단"

재판관 이은애·이종석·이영진은 "구 공수처법 제2조,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이 권력분립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반되어 역시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내면서, 다만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부패범죄에 대하여 공정한 수사권 및 공소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고 전제했다.

반대의견 3인은 다수의견이 각하로 본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이 "수사처장이 이첩 요청을 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를 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서, 그로 인하여 수사권 및 공소권의 주체가 달라진다"면서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고위공직자범죄등을 범할 경우 수사처의 수사 또는 공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현재 확실히 예측되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처장에게 일방적으로 이첩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고, 상대 수사기관은 여기에 예외 없이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수사처는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권 행사에서 행정부 내의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어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하게 된다"고 보면서 "수사처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검사보다 우위의 입장에서 검사의 수사권 및 공소권 행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그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이첩 요청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문언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첩 여부가 수사처장의 일방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고, 수사처로 사건이 이첩될 때 피의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의자 등은 이첩 자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주소 등이 수사처 소재지가 아닌 경우에는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어렵게 되거나 입증자료 제출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으며, 특히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사건을 이첩할 경우 이첩에 따른 구속기간 산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신구속에 관한 사항

조차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들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반대의견 3인은 “수사처의 법적 지위를 입법, 사법, 행정 중 행정에 속하는 독립행정기관으로 보는 법정의견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은 법무부 소속의 검사에게 귀속되어 있던 권한과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수사권과 공소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행정각부에 소속되지 않은 수사처에 부여하고 있어, 이는 헌법 제66조 제4항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냈다. “수사처는 행정부 소속임에도 대통령, 법무부장관 등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고, 국회는 수사처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할 수 없으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외에는 수사처의 수사 등을 통제할 방안이 없는 등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수사처검사의 임기를 검사나 판사와는 달리 지나치게 짧은 3년으로 규정하여 신분보장이 매우 취약하고, 따라서 수사처가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상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 반대의견3

“사법권 독립 침해 및 평등권 침해 인정된다”

재판관 이종석·이영진은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를 언급했다. “수사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 중 판사 및 검사가 약 5,000명에 이르고, 판사와 검사에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은 매년 3,000여 건에 이르며, 수사처가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 중에는 형법상 직권남용·직무유기와 같은 법관의 재판업무 자체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범죄도 포함되어 있어 자칫 수사처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관의 재판 자체에 대하여 내사를 포함한 수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내사가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사법권 및 법관의 독립 등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고, 나아가 재판 당사자가 가지는 헌법 제27조가 보장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냈다. 반대의견 2인은 “공수처법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판사 및 검사 등에 대한 공소권을 행사하여 비고위공직자와 차별 취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고위공직자 등 부패범죄

의 비율이 비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비하여, 그리고 판사 및 검사 등의 부패범죄의 비율이 그 밖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거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권한행사가 공정하지 못하였다는 실증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일정한 범위의 특정한 고위공직자라는 인적 기준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수사기관을 설치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인적·재정적·정치적 관계로 말미암은 이해충돌 상황에 있지 않은 판사 등을 검사 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전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면서 “수사 및 공소권 행사에서의 차별취급, 퇴직시기에 대한 경과규정의 미비, 피고인의 방어권을 고려하지 않은 재판관할 규정 등으로 인한 차별취급의 심화 및 범위 확대는 차별취급을 받은 고위공직자 및 이미 퇴직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정도의 것이며, 이러한 차별취급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워 합리적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해외법 뉴스

**‘잊힐 권리’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시간경과만으로 보도 필요성
부정할 수 없어”
“범죄 혐의 보도의 허용성”**

<출처: 헌법재판연구원>



© Bundesverfassungsgericht

■ 2020년 6월 23일, 사건번호 1 BvR 1240/14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유명인에 대한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을 둘러싼 내용에 관한 보도가 진실이라면 감수하여야 한다”면서 “기본법상 잊힐 권리가, 단순히 도식적으로 시간이 경과하면 언론은 당사자가 꺼리는(잊히기 원하는) 내용을 기사에 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소는 또한 “기사 전반에 걸쳐 보도할 이익이 충분히 있는지, 그리고 부정적인 인상을 줄 상황을 게재할 객관적인 준거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심판청구인은 경제잡지 출판인으로, 2011년 한 인물의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된 인물은 자기 이름을 따서 회사를 설립해 상장한 유명 기업인인 바, 기사는 그가 이사회 의장, 그의 처가 감사위원회 위원이라는 사실을 비롯하여 회사의 사업 및 경제적 성장, 그리고 최근 유동성의 악화와 여러 법적 분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기사는 서두에서 “그는 두 가지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항공기조종과 법적 분쟁”이라고 소개한 뒤, “(이 중) 법학 공부의 마감은 그리 좋지 못하는데, 부정행위를 시도하다가 사법직 국가시험에서 배제되었다”고 썼다. 이어 “그의 법적 난관은 계속되는데, 최근에는 의료보험 감정인 매수혐의로 1년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위증과 협박의 교사 미수 혐의로 상고심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도 했다.

보도된 그 기업인은 함부르크 주법원에 제소했고, 동 법원은 보도 내용 중 ‘부정행위의 시도’에 관한 언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유에서 “사회관계에 관한 사실의 공표는 널리 감수하여야 하기는 하지만, 이로써 그가 부정한 방법에 물든 인물로 묘사되었다”면서 “심판청구인이 단지 졸업을 하지 못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기사내용만 금지한다면, 소송을 즐기며 법학교육을 마치지 못했다고는 여전히 보도할 수 있으

며, 그에 대한 보도가 본질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심판청구인이 주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상고불허결정이 덧붙여졌다. 이 불허결정에 대한 항고 역시 연방민형사법원에서 기각되자, 심판청구인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면서, ‘언론의 보도이익과 당사자의 인격 이익을 형량하기 위하여 오래 전의 사건을 다시 소환하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을 제시했다. 재판소는 △사적 영역의 핵심에 속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적인 언급에서 배제되는 사적 관계나 성생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감수해야 할 사회관계의 사실의 공표와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보도의 이익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절실함이 덜해지지만, 시간적 경과만으로 판단해선 안되고 그때그때의 계기로 새로운 이익이 발생하여 현재성을 다시 부여할 수 있는 점 △대중 앞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노출시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인물일 경우 잊히려는 의지로서 생활을 한 사람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상당한 공을 들이거나 불법행위로 취득하는 경우가 아닌, 직접 접할 수 있어 바로 보도해도 되는 등 공표된 정보의 내용과 정보원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독자의 범위나 판매부수,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지 등 비난기사의 확산효과로써 인격권의 침해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점 등을 언급했다.

재판소는 이 같은 척도를 기준으로 “심판대상인 된 결정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대중 앞에 선 인물에 관하여 대중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은 진실한 정황이라면 언론이 보도할 수 있으며, 그 정당함이 시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도식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했고, 시간요소 외에 보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거가 인정사실이나 해당법원의 형량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소는 “보도와 관련하여 사법직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시도하였다는 사실이 한 인격의 상을 결정짓고 사생활의 자기결정성을 위태롭게 할 만한 오점은 아니기 때문에, 기사에 부정행위의 시도사실을 포함했다 하더라도 그 보도에서 그를 터무니없이 사회적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입장 내지 집요함을 찾을 수는 없고, 그 보도로 사회적 고립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아가 “자발적으로 대중 앞에 계속 나서는 인물이 자신의 지난 잘못을 미담이 아니라 하여 망각 속에 덮어둘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면서 “잊힐 권리는 개별적 행동을 환기할 이익이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절대적이고도 도식적으로 소멸되지는 않고, 그때그때의 보도 및 그 안에 포함된 정보의 이익, 그리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당사자가 자유로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손해를 형량한 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라고 실시했다.

재판소는 또한 “무엇을 어떻게 진실에 맞게 보도하고, 그 사실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일차적으로 언론기관이 결정할 문제”라고 하면서 “형량에 중요한 보도의 공익을 개개의 기사 내용에 비추어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기사 전반에 걸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심판대상인 결정은 이를 간과했다”고도 지적했다.

■ 2020년 7월 7일, 사건번호 1 BvR 146/17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보도기록의 삭제청구를 배척한 민사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잊힐 권리’와 관련하여 “언론보도의 장기간 인터넷 게재 허용성” 및 “범죄 혐의 보도기사에 관한 기준”을 실시했다.

심판청구인은 기사가 보도될 당시 기업자문을 업으로 한 바, 여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면서 특히 지멘스사에서 천만 유로대의 대가를 받았다. 2007년 영어 일간신문 유럽판에는, 당시 공개된 지멘스사의 간부직원에 대한 부패조사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계약을 따

내는 경우 자문인의 역할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그 기사에 심판청구인의 사례가 언급됐다.

당시 수사를 받고 있던 그 지멘스 간부 직원의 진술이 심판청구인에게 부담이 됐는데, 그 내용은 “몇 년 전부터 뇌물 자금이 자문인을 통해 복잡한 경로를 거쳐 분배되는 과정이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서술이다. 심판청구인에 대해 공식적인 수사절차는 개시되지 않았고, 해당 기사는 현재 법원의 부분 인용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된 형태로 여전히 온라인으로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사법원은, 심판청구인이 지멘스사를 위하여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널리 뇌물자금을 돌렸다는 혐의와 관련한 심판청구인의 금지청구를 기각하면서

“공개 당시 적법한 혐의보도였으며, 온라인 기록으로 계속 게재한다 하여 심판청구인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시사적인 사건을 개별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임무이며, 백만 유로대의 뇌물에 관한 중대한 공익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제한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본안 회부 거부결정’을 내리면서 “본래 정당하였던 혐의 보도가 인터넷에 계속 그대로 게재된다면 당사자의 부담이 커지는 경우, 삭제 또는 사후보완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에서 재판소는 “삭제청구의 대상이 범죄 혐의에 대한 기사인 경우, 고도의 공익적 의미를 갖는 혐의를 적법하게

개별적으로 밝혀서 탐사보도를 하는 것은 언론의 임무이고,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공익의 영역일 수 있으며, 수사절차가 종료되었다거나 개시되지 않았다 하여 언론의 공표와 게재의 이익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혐의보도를 통해 당사자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미 해명되었을 수도 있는 혐의에 노출되는 점에서, 이는 중대한 인격권 제한”이라고 했다. “혐의보도에 대한 본래의 허용성은 엄격한 법적 척도의 지배를 받는다”는 설명이다.

재판소는 “심판대상인 결정은 이러한 척도를 충족하고, 제3자가 이 기사를 접할 가능성이 수인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인이 보도된 혐의로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입법 뉴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거나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 또는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판매과정이나 계약 체결과정에 대한 녹취의무를 강화하고,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철회하거나 투자일임계약 등을 해지할 수 있는 숙려제도를 도입한다. 원금손실의 위험이 높고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를 내어 주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대한 명령·지시·요청 등을 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한다. 전문투자

형 사모집합기구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요건도 강화한다.

2. 법원조직법- 2/9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사실상 승진 개념으로 운용되어 법관의 관료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함으로써 대등한 지위를 가진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를 통해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직 법관의 정치적 의사표명이 늘어나는 등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관의 임용 결격사유를 강화한다. 한편, 법원의 윤리감사업무가 독립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윤리감사관 제도를 개선한다.

3. 법관징계규칙- 2/9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을 두도록 「법원조직법」(법률 제17125호, 2021. 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윤리감사관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독립한 기관으로 개편되는바, 법관에 대하여 징계 및 징계부가금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법관징계위원회가 법원행정처장에게 징계등 청구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4. 법관인사규칙- 2/9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법률 제17125호, 2021. 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고등법원 판사가 고등법원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법관인사 이원화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필요가 있다. 기존에 보임된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달리 고등법원 판사

의 경우 보임시기에 따라 경력이 다양하므로, 개정 「법원조직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재판장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규정한다.

* 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이외에 고등법

원 부의 재판장 자격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10조의 제목을 “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으로 변경함(제10조)

* 고등법원 판사 보임 이후 3년 이상 근무하고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판사가 고

등법원 부의 재판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되, 법조경력 기산일과 정기인사 기준일 간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함(제10조제3항 신설)

■ 한국법학원 회비 납부 안내

한국법학원 회비 납부에 동참해 주십시오!

한국법학원 회원 여러분,

한국법학원은 전국의 법관·재판관·검사·변호사·법학교수·연구관·법무관·법제관 등 모든 법률 직역을 아우르는 우리나라 유일의 법률단체입니다.

한국법학원은 1956. 7. 31. 법무부 공고 제38호로 설립된 이래 법학 연구와 집필 활동을 장려하고, 실무계와 학계 사이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대법원 판결록을 발간하였고, 한국민사법학회·한국형사법학회·한국공법학회 등 각종 법학회를 창립시키는 산파역을 담당하였으며, 최초의 영문 법전을 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권위 있는 학술지인 『저스티스』를 계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한국법률가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률가가 된 뜻을 되새기는 강좌’, ‘법조 선후배 만남-소통과 교류’ 등을 비롯한 각종 심포지엄과 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학술연구부를 운영하면서 민·상사법학 연구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연구와 직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이 납부해 주시는 회비는 한국법학원이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는 재원이며 원동력입니다. 회원님들의 참여 없이는 한국법학원이 재정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비 납부 안내는 뉴스레터 하단에 있습니다.)

한국법학원 원 장 권오곤

부원장 김 형 두 (법원행정처 차장)

부원장 김 정 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부원장 이 용 구 (법무부 차관)

부원장 유 철 형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부원장 조 홍 식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한국법학원 연회비	연회비 납부방법	유료회원 제공 서비스	납부계좌
1. 교수, 판사, 변호사, 검사, 법무관 등 개인회원 : <u>3만원</u> 2. 법대도서관, 법률관련기관 등 단체 회원 : <u>5만원</u>	1. 홈페이지 가입 2. 연회비 납부 후 한국법학원으로 이메일 또는 전화 3. CMS 신청 가능: 법학원 사무국으로 문의 (02-753-6002/ ksl@lawsociety.or.kr)	1. <저스티스> 연6회 제공: pdf 다운 가능 2. 심포지엄, 포럼 등 행사참석 가능 (자료집 제공) 3. 한국법학원 세미나실 이용 가능	(우리은행) 052-500872-01-015 (국민은행) 815637-04-000084 (신한은행) 302-05-032394

☺ 한국법학원이 만드는 모든 기사·컨텐츠는 홈페이지 www.lawsociety.or.kr '뉴스레터'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